



과학기술정보통신부



수 신 수신처참조

(경유)

제 목 제재조치 가이드라인 개정안 배포

1. 관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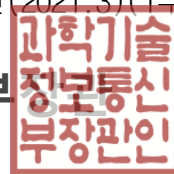
- 가.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
- 나.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시행령 제56조, 제57조,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

2.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시행(2021.1.1)됨에 따라, 구 '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2'의 적용을 받던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관련사항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 관련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.

3. 이에 우리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제재조치 관련 조항을 반영한 '제재조치 가이드라인'을 작성·배포하오니,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관리·수행하는 각 부처, 공공기관 및 대학 등에서는 이를 참고하시어 향후 제재조치 업무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210326_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가이드라인(2021.3)(1부). 끝.

과학기술정보통신부



수신처 : 본부(각 과), 중앙행정기관, 산하 공공기관 (부설포함), 전문기관, 대학교

공업사무관 권성철

기술서기관

대결03/29
이종우

협조자

시행 연구제도혁신과-650 (2021-03-29)

접수 산학연구팀(천안)-132(2021.03.29)

우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, (어진동)

/ http://www.msit.go.kr

전화 044-202-6972

전송 044-202-6048

/ sckwon@msit.go.kr

/ 공개

생각은 창의적으로, 행정은 적극적으로!

접수등록번호	
접수기록물철	제도/규정

결재

